

4주차

**새로운 사회계층,
사족(士族)의 등장:1520년대**

김 성 우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부를 쌓는 사람들

- 관료층
- 외방 유력층

02. 농장(農庄)의 발달

- 16세기 지주제의 발달
- 농장제의 발달 추이

03.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(1): 전가사변형 면제권

- 외방의 무단작폐자에 대한 처벌론의 대두와 전가사변 정책
- 사족층의 재규정화 작업의 추진
- 1524~1525년 전가사변 정책의 향방

04. 사족의 특권(2): 정직(正職) 독점권

- 사족 지위 영속성의 기초: 관직
- 잡류층(雜類層)의 사회적 지위
- 16세기 사족층의 무반(武班) 인식

05. 사족의 특권(3): 향촌 운영권

- 조선 초기 유향소(留鄕所)의 설치와 폐지 추이
- 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
- 1525년(중종 20) 사족의 국가공인 이후
- 향약(鄕約) 실험
- 서치(序齒) 논쟁
- 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

5차시

사족의 특권(3): 향촌 운영권

학습목표

- 조선 초기 유향소의 설치와 폐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를 살펴본다.
- 16세기 국가 공인된 사람이 주도한 향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16세기 서치(序齒) 논쟁을 살펴본다.
- 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이 어떠했는지 살펴본다.

학습내용

- 조선 초기 유향소(留鄕所)의 설치와 폐지 추이
- 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
- 1525년(중종 20) 사족의 국가공인 이후
- 향약(鄕約) 실험
- 서치(序齒) 논쟁
- 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

조선 초기 유향소(留鄕所)의 설치와 폐지 추이

유향소

- 고려시대 사심관제(事審官制) 계승
- 외방의 유력층들이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함



괴산 연풍향청

유향소

- 원인
 - 유향 품관(品官)의 관작이 수령보다 높음
 - 수령의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일 발생

1406년(태종 6)

유향소 혁파

- 태종의 대응 : 유향소 폐지
 - 신명색(申明色) 1인을 두어 수령을 보필
 - 신명색이 수령을 능멸하자 1417년 신명색도 혁파

1428년(세종 10) 유향소의 부활

- 유향품관을 둠
 - 부(府) 이상: 5명 / 군(郡): 4명 / 현(縣): 3명
- 서울에 경제소가 유향품관 통제
- 유향품관의 역할: 활리(猾吏), 간민(姦民) 감찰

1437년(세조 13)

유향소 재폐지

- 원인: 이시애의 난

1488년(성종 19) 유향소 재설치

- 원인: 간리(姦吏)의 농간 심해짐

지방관과 지역 유력층의 관계

부민고소금지법

(部民告訴禁止法)

- 품관과 이민(吏民)들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
원천적으로 불허함 (수령의 반역죄와 불법살인죄를 제외)
- 경국대전, 형전(刑典), <소원조(訴冤條)>:
"수령을 고소한 자는 장(杖) 100, 도(徒) 3년에 처한다."

부민고소금지법

(部民告訴禁止法)

-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시행
- 지방관에 대한 외방 유력층의 우위, 고소 고발 금지
- 지역 유력층은 수령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

1525년(중종 20) 사족의 국가공인 이후

사족들의 자치권 확장

- 사마소(司馬所) 설치
- 향약(鄉約) 시행
- 향안(鄉案) 작성
- 서원(書院) 건립

중종 중반 이후 ‘부민법’ 처벌 강화

- 1524년(중종 19) <전가입거죄조>:
 - "품관이니 이민으로 감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자는 전가사변시킨다."
- <경국대전> 보다 처벌 강도를 2단계 높임

‘부민법’ 완화 노력

- 사족층이 국가의 부당한 권력을 견제할 법적 장치를 요구함
- 1554년(명종 9) 개인의 문제로 호소하는 ‘자기소원자(自己訴冤者)’는 ‘부민고소’를 허용해 줌

향약(鄕約) 실험

향약 시행

- 기묘사림은 <소학>의 실천 중요, 향약 강조
- 1514~1519년(기묘사림 활동기)
 - 일부 사림계 관찰사들이 도단위에서 향약을 시행

향약 폐지

- 1519년(중종 14) 기묘사화 이후
- 훈구파가 기묘 사림의 악법으로 향약을 지목함

향약 확산

- 1556년(명종 11) 이황의 ‘예안향약’ 시행 이후 확산
 - 모델: 중국의 <여씨향약>
- 1567년 사림파 집권 이후
 - 1573년(선조 6): 향약 실시 논의가 전개
 - 전국적 X, 군현 차원의 향약 실시 논의

서치(序齒) 논쟁

조선 초기 사족 등급 구분

- 관료: 관직 고하
- 소과, 대과, 무과 합격자: 시험 성적순
- 성균관, 향교: 입학 연도, 승급 순

사족 공인 이후

- 농장주 이상 경제력
- 유교적 소양을 쌓은 지식인
- 문,무반 관직 후보자

→ 혼맥(婚脈), 사제관계, 동문의식, 지역 연고 등의 복잡하게 작용

서치(序齒) 논쟁

- 기묘사림: <소학>을 기반으로 향당에서의 좌차(座次)를 나이 순으로 정함
- 1525년 사족 공인 이후: 나이 순 인식이 확산
- 1540년대 이후: 향당과 향교에서 서치가 대세가 됨
 - 성균관 유생들 간 대립 : 전통론(입학 연도, 성적) VS 새 주장(서치)

이이 <해주향약>(1577)

“ 모임에는 나이 순서로 앉는다.
만약 서열이나 비사족일 경우에는 따로 서열을 정한다. ”

서치(序齒)의 법제화

- 1633년(현종 4): 성균관 좌차의 기준을 서치로 최종 확정
- 나이 순 좌차 설정의 의미
 - 사족의 동질화
 - 자체 결속력 강화
 - 주도 세력으로 위상 확인

향당에서 사족의 자체 처벌권

향약의 4가지 덕목

- 덕업상권(德業相勸)
- 과실상규(過失相規)
- 예속상교(禮俗相交)
- 환난상휼(患難相恤)

과실상규(過失相規)

- 16세기 향약 실시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됨
 - 이유: 향약 참여자에게 자체 처벌권으로 허용하는 조항이기 때문

과실상규(過失相規)

- 기묘사화 이후 훈구파의 입장
 - 사족들의 독점 처벌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함
 - 공권력 집행 우선:
사회의 모든 질서는 국가가 마련한 틀에서 이루어져야 함

사족들에게 자체 처벌권 부여

- 이이 <해주향약>: ‘사창계약속(社倉契約束)’의 형벌 규정
 - 향약에서 처벌하는 형벌을 5가지로 나눔
 - 가장 높은 형벌: 상벌(上罰)을 범한 자에게 해당자를 뜰에 세우거나 모임에서 면책함

‘상벌’에 해당하는 범죄

- 가정윤리
 - 상(喪) 중인데도 술에 만취된 자 등
- 사회윤리
 - 상전 앞에서 언행이 불공한 하인 등
- 무단작폐
 - 직책을 이용하여 용사(用事)하는 자 등

‘상벌’에 해당하는 범죄

- 각종 경범죄
 - 이유가 있지만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자 등
- 규약 불이행
 - 약령(約令)을 준수하지 않은 회수가 3번에 이른 자

‘고관치죄’에 해당하는 범죄

- 극악한 범죄: 가정윤리, 사회윤리
 - 가정윤리: 부모에게 불효한 자 등
 - 사회윤리: 상전을 배반한 하인 등
- 각종 중범죄
 - 연소배가 이유도 없이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자 등
- 규약 불이행
 - 약령을 준수하지 않은 회수가 4번에 이르는 자

사족의 자치질서와 국가공권력의 행사범위

- 강상, 명분적 범죄가 ‘사변’형과 경계가 모호함
 - 사족층은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
- 사족층의 자치 질서: 향약의 상벌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
- 사족층의 자체 체벌권: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함

마무리

- 사족의 특권: 향촌 운영권
 - 사족들의 동류의식
 - 서치 관행
 - 향약원 규약과 자체 처벌권

마무리

- 부를 쌓는 사람들
- 농장(農庄)의 발달
- 사족의 공인과 신분적 특권(1): 전가사변형 면제권
- 사족의 특권(2): 정직(正職) 독점권
- 사족의 특권(3): 향촌 운영권

다음 차시에서는

- 사림파의 집권과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

[출처01] 문화재청

<https://www.heritage.go.kr/heri/cul/imgHeritage.do?ccimId=4360684&ccbaKdcd=31&ccbaAsno=00130000&ccbaCtcd=33>

REFERENCE

김성우, 제2장 「16세기 국가 재정 수요의 증대와 재정운영의 위기」, 『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』 (역사비평사, 2001), 51-93쪽.

김성우, 제3장 「공민층의 몰락과 국역체제의 해체」, 같은 책, 95-159쪽.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